

심해저자원개발에 관한 국제규범의 국내법 수용과 제정방향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Hee-Cheol Yang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핵심용어 : 심해저 자원, 국제해저기구, 심해저자원개발법

1. 연구목적

국제해저기구(ISA) 이사회는 2010년 제16차 회기를 통해 ITLOS 해저분쟁재판부에 협약상 당사국의 법적 책임과 의무,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요청하였다. 해저분쟁재판부는 2011년 재판관 만장일치로 ISA의 요청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였다. 해저분쟁재판부는 권고적 의견의 핵심은 심해저 활동을 보증하는 보증국이 면책되기 위해서는 자국법 내에서 합리적 조치(국내법 혹은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심해저자원개발법은 국제규범의 국내법으로의 수용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현행 해외자원개발법과 같은 법제와는 전혀 성격을 달리 하며 접근되어야 한다. 본문에서는 법안 제정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 및 주요 구성방향 등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2. 법안 제정을 위한 고려사항

법안은 심해저자원 관련 국제규범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심해저 활동 관리, 자원개발 기본계획, 심해저활동에 종사하는 국민의 허가 및 취소, 보증서 발급 및 종료, 심해저 활동 지원을 위한 육성정책, 해양생태환경의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1) 공간적 범위 : 법안의 공간적 범위는 ISA가 관리하는 심해저를 대상으로 하며, 심해저 활동이라 함은 심해저에서의 탐사와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본계획 : (1) 지역의 위치와 면적, 광상의 종류, (2) 사업계획서, (3) 재무, 투자 및 기술적 능력 증빙, (4) 심해저 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평가 자료, (5) 해양환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의 비상조치계획 등

3) 경쟁력 강화 : 심해저 사업 수행의 합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같은 심해저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합작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허가 및 보증서 발급 : 심해저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허가 제도를 두고, 허가를 받은 심해저

사업자에게는 ISA와 계약체결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 허위로 허가를 받는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허위로 사업허가를 받거나 계획에 따른 심해저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에 대하여는 보증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의 종료는 국제해저기구에 보증의 종료와 그 이유가 서면 통보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였다. 탐사 및 개발권에 대한 허가 신청서 심의는 접수된 순수에 따라 심의하며, 허가기간은 10년을 기본으로 하고 연장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ISA와의 계약기간과 연동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으나, 관리적 측면에서 10년을 주기로 연장하는 것 역시 행정 규제적 조치로 해석될 수는 없을 듯하며, 오히려 국제규범의 준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조치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5) 심해저 사업자의 의무 : 심해저사업자는 해양환경보호 조치, 비상조치계획,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특히 해양환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한 경우에 대하여는 즉각 경보, 즉각 보고(해수부, ISA), 이행가능한 합리적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결론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ISA는 보증국의 국내적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심해저 활동 참여를 승인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심해저 중요 자원 모두에 대한 탐사광구를 확보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의 심해저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UNCLOS 및 관련 국제규범을 이행토록 하기 위한 국내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사 사

이 논문은 2017년 수행된 해양수산부의 “상업개발 역량강화 및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ceaser@kiost.ac.kr, 031-400-6510